##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재단의 업무처리기준 및 대학 자체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참여제한,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등 행정적·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 및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1. (신청)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과정에서 재단 및 소속대학의 자격사항(학적,성적, 학자금 지원 구간 정보 등)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하였음에 동의 합니다.
- 2. (선발)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과정에서 재단 또는 소속대학, 근로기관에 허위서류 제출,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근로업무) 본인은 동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계획서를 사전에 근로기관 (근로지) 및 대학과 협의하여 제출하고, 사업 기준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주 업무가 취업역량과 무관한 단순 업무(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촉,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근태관리 불가 업무, 외부인 접촉이 잦은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에 취약한 업무는 지양
- 4. (준수의무) 본인은 아래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가. **사전교육이수 및 서류 제출의무**: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업무스케줄 작성, 교육이수보고서 제출 등 근로활동 시작 전 사전준비사항
  - 나. **학업시간표 입력의무**: 본인의 학업시간표를 근로활동 시작 전에 소속대학의 학사정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 다. **출근부 입력의무**: 근로 후 즉시입력이 원칙이며, 근로한 내용을 출근부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내용이 중복된 것은 아닌지 등 확인할 것
  - 라. 학적변동 신고 및 근로중단 의무: 근로장학금은 재학 중에만 수혜가능함을 숙지 하고, 학적변동 (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를 중단
  - 마. **근태증빙 의무**: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되었으나 근태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바. **범죄경력조회 협조의무**: 근로(활동)기관에서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경우 근로장학생은 협조해야 함
- 5. (근로장소) 본인은 반드시 대학에서 배정한 근로기관(근로지)에서 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기관이 제공한 활동장소에서 근로함을 확인하고, 만약 이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 또는 재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부득이하게 재택근로를 하는 경우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며, 일별 업무일지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월별로 근로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6. (근로시간) 본인은 원칙적으로 근로활동시간이 9~18시임을 확인하며, 이외 시간에 근로활동이 진행될 경우 근로 시작 전에 대학 및 근로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인은 최대 근로시간 기준조건인 1일 8시간, 학기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예외사유가 없이 기준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가 행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7. (제재) 본인은 부정근로 등 아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제재 및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에 모두 참여제한됨에 동의합니다.

## 가. 부정근로

- 허위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제재)

- 대체근로 : 근로중지,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나. 부적격자 :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발된 경우 해당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지

다. 허위서류 제출자: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시 근로중지, 적발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수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8. (반환동의) 본인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장학금을 대학에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가. 근로지 구분(교내→교외) 오입력에 따른 초과지급분
- 나. 대학이 장학금 지급시 행정처리 실수로 인한 초과지급분
- 다. 기타 적법한 사유 없이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9. (이해관계 회피) 본인은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또는 수혜대학생(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에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근로기관(근로지) 및 장애대학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근로장학금 관리를 위해 동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전에 미고지 이행사실이 이후에 발견될 경우환수 및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10. (주의사항) 본인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가. 동시에 복수의 근로지에서 근로활동이 불가함
- 나.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업시간과 중복되므로 근로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으며 허위근로로 인정될 수 있음
- 다. 일정 시간 근로 후에는 근로지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평가결과는 근로지 관리를 위하여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
- 11. (점검) 본인은 대학 또는 재단이 근로활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 또는 불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 12.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수) 본인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고, 동 사업 취지에 따라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 13. (중복참여 금지) 본인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간 중복참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03월 14일

소속대학 : 배재대학교(본교) 학부

학과 : AI소프트웨어공학부(게임공학)

서약자 : 강세빈 (서명/인)

## (참고) 근로장학생 제재 사유

아래는 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참여 근로장학생의 자격해제 사유(업무처리기준)로 행정적 조치에 더하여 사유별로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근로장학생 제재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외 대학이 판단하였을 때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은 내부문서로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보관하고 자격을 해제할 수 있음